#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18

발의연월일: 2020. 9. 18.

발 의 자 : 송옥주·장철민·양연영

이수진비・윤준병・오영환

윤미향 · 김회재 · 김철민

이형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 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징수액 중 약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나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현행 부담금의 용도 규정에부과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을 추가하며,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를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 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으로, "생태 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에서" 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4항 중 "생태 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및 가 산금중"을 "및 가산금 중"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34조제1항에 따 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기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 금"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용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을 각각 "생태계보전

부담금을"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의"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로, "생태계보전협력금중"을 "생태계보전부담금 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아 정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환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 ----생태적 가치가 낮은 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 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소화할 수 있도록-----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 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u>생태계보전</u>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 ② -----생태계보전부 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 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 ③ ----생태계보전부 력금은 50억원의 범위에서 생 담금은----

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생태계 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 또 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 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 면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u>생태계보전협</u> <u>력금</u>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 급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부담
<u> </u>
④ <u>생태계보전부</u>
담금
,
⑤
생태계
<u>보전부담금</u>
<u>생</u> 태계보전부
<u>담금 및 가산금 중</u>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
<u>력금</u> 의 징수절차·감면기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
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u>「국</u>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u>률」</u> 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
준으로 한다.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기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u>생태계보전협력금</u>의 부과 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

⑥생태계보전부	-
<u> 담금</u>	
제34조	
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 · 지역 및 「국토의 계획	-
<u>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 <u>생태계</u>	-
<u>보전부담금</u>	
②	
생태계보전부담금	
<u>'용세계포건가 타고</u>	

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46조 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 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 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 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 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사용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 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 3. 제1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 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 4. 5. (생략)
-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 7.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의 생태계 보전
-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 9. (생략)

<신 설>

- 10. 11. (생략)
-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12.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생태계보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

<u>생태계보</u>
전부담금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 9. (현행과 같음)
-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 태 복원사업
- 10. 11. (현행과 같음)
- 12. ------<u>생태계보전부담금</u>-----

\_\_\_\_\_

13. · 14. (생 략) <신 설>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 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13. • 14.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 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교부 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 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 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 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 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 외한다.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지원) ① ----생태 계보전부담금을--------생태계보전부담금을---------생태계보전부담금의-태계보전부담금 중-----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
②
생태계보전부담금
<u>생</u>
태계보전부담금